「양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」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

의 안 번 호	제 2827 호

제출년월일 : 2023년 2월 2일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

1. 제안이유

○ 양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를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(청소년상담복지센터) 및 제42조의2(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)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

○ 「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5조(민간위탁 사무의 의회 동의 등)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2.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○ 「양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」는 청소년상담, 청소년안전망구축, 위기청소년 상담·보호·긴급구조·자립지원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무로써 청소년관련 다수의 경험을 소유한 역량 있는 민간 법인 등에게 위탁하여 시설 운영의 전문성 확보 및 효율성 향상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 : 양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

나. 위탁사무내용 : 양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관리·운영

○ 주요사업

- 청소년 상담 및 또래관계·사회성·인터넷중독 등 예방교육사업
-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·보호·교육·자립 등 통합서비스 제공 등

다. 위탁시설 개요

시설명	소재지	시설규모	종사자수	비고
양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	양천구 남부순환로83길53 2층	201.4㎡ (전용면적)	7명	

라. 위탁기간 : 3년(2023. 7. 1. ~ 2026. 6. 30.)

마.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 후 '수탁기관 선정위원회' 심사선정

바. 소요예산 : 금454,251천원(2023년)

사.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: 적정

○ 2023년 제1차 위원회 심의결과 통보, 기획예산과-1148(2023.1.27.)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(청소년상담복지센터) 및 제42조의2 (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)
- 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규칙 제22조(위탁운영의 기준 및 방법 등)
-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(운영의 위탁)
- 「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및 제5조(민간위탁 사무의 의회 동의 등)